

구미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,전기공급설비)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

1. 제안사유

구미시 비산동 일원에 설치된 고압 송전철탑(7기)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신규철탑1기 및 전력구를 건설하여 송전선로를 지중화 함으로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, 도시 주거환경 및 주민 복지 증진에 신뢰를 확보하며 신규 철탑부지 및 송전선로 지중화 편입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이 감소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음

2. 주요내용

□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 결정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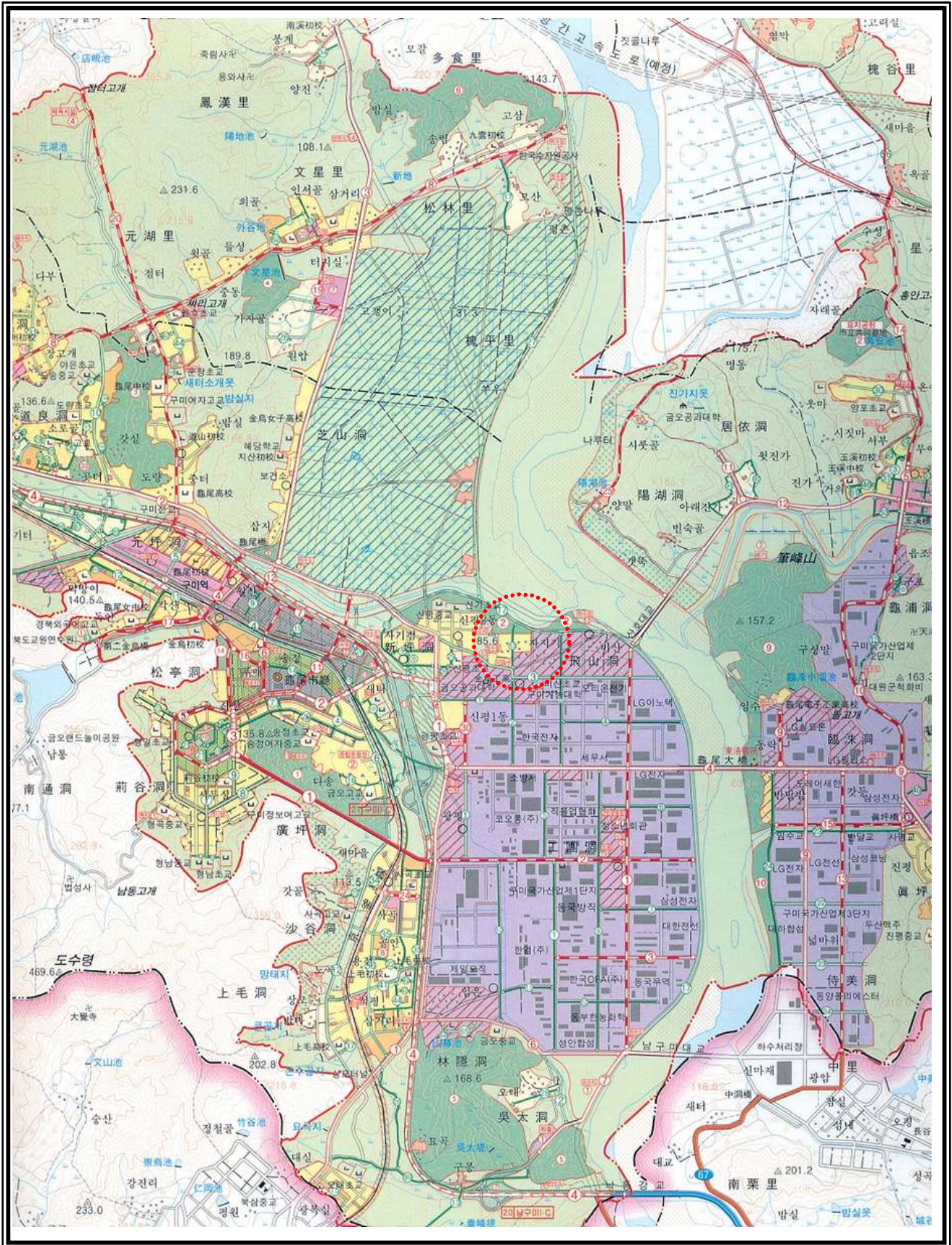
- 사업의명칭 : 154KV 구미 인출 전력구 공사
- 위치 : 구미시 비산동 산6-1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
- 사업내용 : 신설-송전철탑 1개소, 신설-지중 송전선로 21m
- 면적 : 735m²
- 공원변경면적

공 원 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비산공원	근린공원	비산동 산 9번지일원	244,266	감735	243,531	

3. 붙임

- 1) 위치도
- 2) 현황도

□ 위치도



[illegible]

의회의견 청취 설명자료

□ 의견 청취 사유

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구미변전소 주변(공단동, 비산동)에 설치된 고압철탑7기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신설되는 철탑1기 및 지중화선로 설치에 따라 신설되는 철탑1기를 공원부지에 설치코자 함

□ 의견 청취 내용

-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 결정 변경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비산공원	2	비산공원	근린공원	비산동 산9번지 일원	244,266	감735	243,531	건교고 1973.12.31	

□ 사업내용

- 사 업 명 : 154KV 구미 인출 전력구 공사
- 위 치 : 구미시 비산동 산6-1번지 일원
- 사 업 내 용 : 송전철탑 1개소, 지중 송전선로 21m
- 사 업 비 : 100억원
- 사업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(부산전력구 건설처)
- 사 업 기 간 : 2006년 허가일로부터 ~ 2007년 12월 31일

※ 참고자료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」

제28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①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(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민"은 "지방의회"로 본다.